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 경우 3년 이내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제2항 신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전 3년 이내에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1
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 <u>-----.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u>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동일함)	② ~ ④ (개정안과 동일함)

제16조(빛공해환경영 향평가) 시·도지사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 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 향을 <u>3년마다</u>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음) 제16조(빛공해환경영 향평가) ----- ----- ----- ----- ----- <u>5년마다</u>----- ----- ----- -----.	같음) 제16조(빛공해환경영 향평가)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빛공해환경영향 평가 결과의 시· 도 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 례) 제5조제1항 후 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시·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안과 같음) 제2조(빛공해환경영향 평가 결과의 시· 도 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 례) (개정안과 같 음)

	도 빛 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도 빛 공해 방지 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도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전 3년 이내에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다.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39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김위상 · 김미애 · 김정재
권성동 · 김형동 · 윤한홍
김기현 · 배준영 · 김대식
김선교 · 우재준 · 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에서, 3년 이내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로 갈음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시·도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전 3년 이내에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1

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u>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u>3년마다</u>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 ----- ----- ----- ----- ----- <u>5년마다</u> ----- ----- -----.